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2
----------	------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이병도 의원의 19명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금액을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등을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생활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안 제2조제5호 등)

- 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 등록된 사람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4. 3. 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7. 12. 12.>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7. 12. 12.>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전문개정 2008. 12. 19.]

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생활보조비의 금액을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리고, 건강관리비로 월 5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p>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u>월 70만 원</u></p> <p><u><신 설></u></p> <p>2.·3.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지원 사업) -----</p> <p>-----</p> <p>-----</p> <p>----.</p> <p>1. -----</p> <p>----- <u>월 100만 원</u></p> <p>2. <u>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u></p> <p>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 현재 서울시에 총 4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평균연령 9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인당 지원 내용〉

(단위 : 천원)

지원내용	월별 지급액					비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생활안정지원금	1,043	1,043	1,289	1,337	1,404	국비
간병비	1,083	1,083	1,120	1,120	1,360	국비
생활보조비	700	700	700	1,000	1,000	시비
건강관리비	-	-	-	500	500	시비
합계	2,826	2,826	3,109	3,957	4,264	

※ 사망조의금(100만원) : 원인발생시 지급

- 다만 동 개정안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의 변경된 사항(생활보조비 70만원→100만원, 건강보조비 50만원 지원)이 이미 2018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지원 확대의 타당성이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2년이라는 기간동안 조례 개정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종합 의견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평균연령 90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건강관리비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은 타당성이 있고,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조례개정 이전에 기시행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법정주의에 대한 위반 소지가 높은 바, 여성가족정책실의 안이한 행태에 대한 의회차원의 강력한 경고와 지적이 필요하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2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이병도·이영실·김화숙·여명·이상훈·김기덕·박순규·신정호·유용·이광호·김정태·봉양순·채인묵·김용연·이광성·김제리·김소양·임종국·김혜련·김동식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금액을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월 7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p>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u>월 70만 원</u></p> <p><u><신 설></u></p> <p><u>2.·3.</u>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지원 사업) ----- ----- -----.</p> <p>1. ----- ----- <u>월 100만 원</u></p> <p><u>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u></p> <p><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